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 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진보통합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수 신 :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이대영
 - 제 목 :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검토에 관한 질의서
 - 일 시 : 2011년 12월 29일(목)
 - 문 의 : 배경내 공동집행위원장 (017-214-3550), hregang@hanmail.net
-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로 성사시키고 제정을 위해 힘써왔던 단체입니다. 지난 12월 27일 저희 조례본부 공동대표단과 각계 대표들이 이대영 부교육감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기에 아래와 같은 질의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재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주민발의로 성사된 조례안과 교육청 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한 조례안까지 신중히 검토한 끝에 수정된 조례안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이 조례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재의'를 요구하기 위한 사전 절차입니까, 아니면 '조례 공포'를 위한 사전 절차입니까?

2. 지난 11월 21일, 서울시의회가 진행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원안통과든 수정통과든 논의를 거쳐 통과되면 받아들이고 공포하겠느냐'는 서윤기 시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대영 부교육감님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습니까? 만약 변화가 있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의회 결의로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공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 또는 '상위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뿐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위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4. 부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은 현재 공석에 있는 교육감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지 교육감이 시민에게 약속하고 집행하고 있던 정책의 방향을 뒤집거나 중단시키는 것은 아닐 터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력, 일부 단체들의 정도를 벗어난 주장을 이유 삼아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부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 단체는 물론이고 서울교육을 사랑하는 각계 대표들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조례의 현장 안착을 위한 로드맵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때이며 불필요한 절차로 사회적, 교육적 에너지를 낭비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부교육감의 답변과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 답변 보내실 곳 : hws3388@gmail.com 또는 Fax. 02)365-5364

(끝)